

August 18, 2014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과세 부분

2014. 8. 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안
적용대상	모든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적용요건	①, ② 모두 충족 ①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 등 제외 ** 평균 계산시 임금증가율이 음수 등인 연도는 제외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액	$[\text{당해연도 평균임금} - \text{직전연도 평균임금} \times (1 + \text{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times \text{직전연도 근로자 수} \times \text{세액공제율}$
적용시기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

2.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법인세법 제56조(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안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과세방식	④또는 중 ⑥ 선택 (최초 선택시 3년 계속 적용) ④[당기소득 × 기준율α(60~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⑥[당기소득 × 기준율β(20~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에서 공제 가능 (미공제 잔액은 과세) -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 공제 가능 ※ 과세방식 무신고시 최초연도 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적용하고, 미활용액은 발생연도에 즉시 과세
과세 적용기준	- 당기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또는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 (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가감한 금액 - 투자액 -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 - 임금증가 - 직원(임원, 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 - 기타 -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적용시기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요건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간소화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요건 • 규모기준 -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 졸업기준 (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상시 종업원수 : 1천명 - 자기자본 : 1천억원 - 매출액 : 1천억원 - 자산총액 : 5천억원	■ 중소기업요건 간소화 • 규모기준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 졸업기준 (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폐지) - (폐지) - 매출액 : 1천억원 - 자산총액 : 5천억원

동 개정안은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4. M&A 활성화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안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 차익 과세이연 * 워크아웃, 채권은행협의회 특별약정, 법정관리, 재무구조개선 약정 • 지원요건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수 - ①, ② 중 하나만 해당 ① 다른 기업으로부터 신주 등을 양수하는 경우 ② 다른 기업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과세특례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법인주주) 및 양도소득세(개인주주) 과세이연 • 적용시기 - 2015. 1. 1. 이후 주식 등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 조의 2)	- 적격합병·분할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해도 사후관리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매각을 심의·의결하여 주식 처분시 - 채권은행협의회와의 특별약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처분시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 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 조 제1항)	-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을 신청한 기업 등 - 적용시기 2015. 1. 1. 이후 출자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16. 12. 31.

5.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시행시기를 2015. 1. 1.에서 2016. 1. 1. 이후로 유예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 세율 - 법인세율 + 10% - 시행시기 2014. 1. 1. 이후 - 단, 중소기업은 2015. 1. 1. 이후	■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 세율 (좌동) -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2016. 1. 1. 이후 시행)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조 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황인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65 | E-Mail. ishwang@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